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7. 1. 24.(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 '마' 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03(서)-003)

- 미래창조과학부의 월촌유선방송사 등 5개 중계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7-03(서)-004)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후보자(9인)>

구 분	성 명	성 별	현 직	비 고
위원장	고삼석	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연임
방송 등 언론 분야	설진아	여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신임
	강진숙	여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임
교육·문화계	조희수	여	서초문화재단 이사	신임
	최정일	남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연임
법조계	조재연	남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신임
	최정열	남	법무법인 울촌 변호사	연임
시청자단체	강혜란	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신임
기타 전문가	곽정호	남	호서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	신임

다.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03(서)-005~013)

- 「방송법」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2,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주)문화방송 등 9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행위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문화방송	가상광고 크기 및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1호,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2,000만원
(주)조선방송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9,500만원
(주)엠비씨플러스	가상광고 선수가림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3호가목	5,334만원
(주)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중간광고 고지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1,200만원
(주)스포티비	가상광고 고지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	1,000만원
(주)타임투미디어	중간광고 고지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500만원
(주)티캐스트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000만원
(주)현대 미디어	중간광고 횡수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나목	500만원
(주)이채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위반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500만원

라.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03(서)-014~018)

- 「방송법」 제74조 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주)에스비에스 등 5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에스비에스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호	1,050만원
(주)에스비에스플러스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제1호	700만원
(주)제이티브이플러스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350만원
(주)스카이라이프티브이	「방송법」 제74조제1항,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제1호	850만원
(주)엠비씨플러스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500만원

마.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사업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건 (2017-03(서)-019~021)

- 제66차 위원회(2016.11.17.) 및 제69차 위원회(2016.12.7.)에서 의결한 (주)내외경제티브이, (주)한국어린이방송, (주)조선방송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과 관련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내외경제티브이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	1,000만원
(주)한국어린이방송	「방송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2호가목	1,750만원
(주)조선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000만원